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토스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26.7.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8.4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보고·게시·통지의무 위반

- ☐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권익 확대 또는 의무 축소를 위해 약관을 변경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 토스증권(주)는 2021.8.5. ~ 2024.7.17. 기간 중 총 4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약관 중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면서 3회 지연 보고하고, 2회 통지 누락하고, 1회 지연 게시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1항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 토스증권(주)는 2021.1.21.부터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토스증권(주)는 2021.10.14. 금융위원회에 지연신고(지연일수 : 273일)

<관련 법규>

1. 舊「자본시장법」 제40조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